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7. 7. 18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97년 7월 8일

○ 회부일자 : '97년 7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97. 7. 16)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97. 7. 18)

심의,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기획관리실장 : 김 동 기)

가. 제안이유

육천전문대학 설치에 따른 정원책정을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정원조정 : 총50명증〉 2,718명 → 2,768명

○ 본 청 : 978명 → 957명 (감21명)

- 직속기관 : 1,150명 → 1,222명 (증72명)
- 사업소 : 293명 → 292명 (감 1명)

<정원증감 내역>

- 옥천전문대학 78명 배치
 - 교원 50명 (순증)
 - 사무직원 28명 (자체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태 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옥천전문대학 설치에 따른 정원책정을 하여 '98학년도 개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에 있어 교원 50명과 사무직원 28명 총78명이 되겠으며 교원의 경우는 50명 전원이 순증원이 되는 것이며 사무직원의 경우는 지난 132회 정기회시 도의 조직개편으로 도 본청에 유보정원으로 있는 인원21명과 직속기관 6명 사업소 1명을 자체조정하여 배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이유

교육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정한 인원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2개과가 아직 미확정인 상태에서 정원만 확보한다는 것은 인력 및 재정적 낭비 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

나. 주요골자

<정원조정 : 총41명증> 2,718명 → 2,759명

- 본 청 : 978명 → 962명 (감16명)
- 직속기관 : 1,150명 → 1,208명 (증58명)
- 사업소 : 293명 → 292명 (감 1명)

<정원증감 내역>

- 육천전문대학 64명 배치
 - 교원 41명 (순증)
 - 사무직원 23명 (자체조정)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참석 7명, 찬성 7명)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붙임 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대비표